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가단1282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1. C

2. D

변 론 종 결 2021. 8. 11.

판 결 선 고 2021. 9.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C과 A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A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9. 12. 18. 접수 제1441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D와 A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는 A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9. 12. 17. 접수 제14380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참가인으로부터 발급받은 2017. 5. 18.자 및 2017. 6. 20.자, 2019. 5. 30.자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참가인은 A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2020. 6. 30. E은행에 825,278,752원을, 2020. 7. 15. 중소기업은행에 273,492,095원을 각 변제하였다.

나. 한편 A 주식회사는 2019. 12. 17. ①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9. 12. 18.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피고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9. 12. 1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가.항 기재 대위변제에 따른 A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9. 25.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13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B가 관리인으로서 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13조 등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관리인이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적법한 수계적격이 있는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관리인은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그런데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원고의 소송수계 신청에 따라 원고적격이 있는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나,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경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남양주시 공장용지 2515㎡

2. 경기도 남양주시 주택축물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평지붕, 경사지붕 3층 공장

1층 1310.88㎡

2층 1568.13㎡

3층 361.08㎡

옥탑1층 67.13㎡

